

23

## 확성기 소음과 환경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헌법 제35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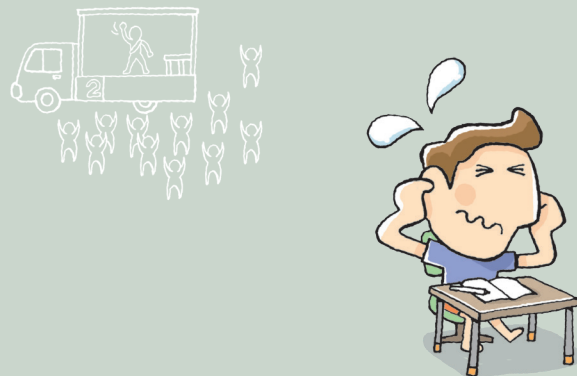
# Case

김과민씨는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이다. 소리에 예민한 김과민씨는 집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피해 조용한 독서실에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 곧 그가 원하는 회사에서 채용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부터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어 화성기를 통해 들리는 연설 소리와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각종 노래소리 때문에 온종일 집중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김과민씨는 경찰서와 구청, 동사무소, 지방환경청, 심지어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몇 번씩 전화를 걸어서 소음을 없애 달라고 했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라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김과민씨는 아무리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장소의 제한 없이 어디서나 시끄러운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즉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고 싶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쁘면 건강도 나빠지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도 없게 된다. 그래서 환경권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권리이다. 이렇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보호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소음·진동·대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소음 없이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환경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 김과민씨는 바로 소음공해로 인해 생활환경의 침해를 받고 있다.



녹조현상 서울 한강 원효대교 인근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

만약 국가가 직접 환경을 훼손하면 우리는 국가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자유에 근거하여 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것과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를 건설하고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하천을 정비하거나 댐을 건설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가 지나치게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게 되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을 국가 스스로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환경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뒷집만 지고 있다면, 우리는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각종 생활쓰레기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을 배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하는 물과 공기를 오염시킨다. 기업들은 골프장 건설로 산과 들을 오염시키고 각종 산업폐기물을 하천에 버림으로써 하천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국가는 다른 사람들이나 기업이 환경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할 때에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sup>01</sup> 이처럼 국가가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것이 불충분하거나 실효성이 없어 우리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다른 사람들이나 기업이 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sup>01</sup>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됨을 명시하고, 공직 후보자와 사회자가 확성장치를 각 1대, 1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금지되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없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산나발도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심야에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도 있다.

위 사례에서 국가가 직접 김과민씨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일반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과민씨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시끄럽지 않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확성기 소음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달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환경권 보장의 특수성과 보장의 한계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구가 제한 없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전체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음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선거운동은 국민이 민주적 의사를 표현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다소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하여 이를 못하도록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도 확성장치 사용에 의해서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기간, 확성장치의 사용장소, 사용대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규





**황사현상**  
봄에 주로 나타나는 황사는 중국 내륙의 사막에서 불어온 모래바람이다. 중국 내륙의 사막화로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고 농도도 진해지고 있다.

정까지 두고 있는 이상, 확장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만약 위와 같이 확장장치의 사용장소, 사용대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확장장치에 대한 소음규제기준을 두지 않아서 발생하는 생활환경의 피해는 더욱 커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환경권을 제한하더라도,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가 더욱 크고 무겁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경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원자력 발전과 환경권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더욱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방사능유출로 인한 환경재앙을 우려하여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는 요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더욱 강력하



**일본, 사고원전 4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원자로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게 제기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의 과학기술적인 상황에서 비교적 경제적인 전기생산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전기생산방식이 개발·정착될 때까지 그 유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전기에너지가 없으면 산업시설을 가동할 수 없어 국민경제의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는 원자력발전 시설의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기술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sup>02</sup>

0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1978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연방헌법재판소 판례집 49권 89면 이하).

## 환경권 보호와 국제적 연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몽고나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 우리의 생활환경이 매우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환경권의 문제는 국경이 따로 없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국제적인 공동노력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탄소배출량 감소노력이나 녹색운동은 환경권 보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환경권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언제나 명심할 필요가 있다. 환경공해로 생기는 환경무덤은 모두의 공동무덤이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다 함께 환경개선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이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함께 지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 생각해 볼 문제

생활소음과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자.